

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
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0	2001년 9월 일 보건사회위원회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
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
제2차 보건사회위원회
(2001년 9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정책관 김애량)

가. 제정이유

실질적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여성정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.(안 제3조)
 - 가) 서울여성플라자(동작구 대방동 345 소재) 운영 및 관리
 - 나)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
 - 다)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 - 라)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
 - 마)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 - 바)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 - 사)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
 - 아) 여성관련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
 - 자)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 - 차)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(2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.(안 제4조)

- (3) 정관기재사항을 규정하고,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을 승인신청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5조)
- (4)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며,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.(안 제6조 및 제9조)
- (5)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, 감사는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도록 함.(안 제8조)
- (6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들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- (7) 재단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.(안 제15조제1항)
- (8) 재단은 매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15조제2항)
- (9) 여성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)
- (10)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또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- (11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○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,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, 2002년 개관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자」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사항

- (1) 상임이사 임명(안 제9조제2항)
 - 안 제8조에 의하여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, 업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9조제2항에 의

<p>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.</p> <p>-당연직 이사장은 안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행정(1) 부시장이므로 당연직 이사장인 이사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처럼 이사회 추천 그리고 이사장 제청을 통한 시장임명 방식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.</p> <p>(2)지도·감독(안 제17조)</p> <p>○ 안 제17조에 의하여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재단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.</p> <p>-이는 우리 시 타 재단법인인 산업진흥재단, 세종문화회관,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지도·감독 기능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으로 여겨짐.</p> <p>-여성플라자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을 설립·운영하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민간자율과 책임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타 재단법인 수준으로 시의 감독기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.</p> <p>3)기타</p> <p>○ 조례안의 사업내용, 기본재산의 조성, 정관 기재사항, 수익사업, 운영재원사업년도, 사업계획서·결산서 등 제출, 업무의 위탁, 공무원의 파견 근거규정 등의 사항은 서울시가 출연한 다른 재단법인 설립·운영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p>○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</p> <p>○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</p> <p>○ 미구성</p>	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참석위원 전원일치)</p> <p>가. 수정이유</p> <p>○ 동 조례안은 2002년 개관 예정인 「서울여성플라자」의 운영·관리를 위한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, 상임이사의 임명방식을 재단법인의 자율성 내지는 책임경영의 효율성과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상임이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.(안 제9조제2항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</p> <p>○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○ 없음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9조제2항중 “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”를 “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 의 제청으로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재단법인서울여성」 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립)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 법인으로 설립한다.</p> <p>제3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2.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.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 자원화 사업 4.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5.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.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.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
--	--